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880

제출일자 : 2026. 9. 28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조례에 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, 통합지원협의체와 자문단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조문 및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에 상위법 위임근거 및 인용조문 명시(안 제1조, 안 제11조)

나.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변경(안 제11조)

다. 자문단 수당 지급 규정 기재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추후 자문단 운영 시 자문단 수당 예산 확보 예정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(2) 입법예고(2026. 6. 1. ~ 6. 21.) 결과 : 의견없음

※ 입법예고 이후 상위법 위임근거 및 인용조문을 보완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어 재입법예고 생략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노쇠,”를 “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노쇠,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”를 “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”로 하고, “둔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두되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”를 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자문단) ①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단의 단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노쇠, ----------.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---------- 두되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	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제12조(자문단)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	제12조(자문단) ① ----------.
<신 설>	② 자문단의 단원에게는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. 이 경우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참고 **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**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통합돌봄 자문단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소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(제9조제5항제1호)

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통합돌봄 자문단 수당 : 150천원×6명×4회=3,600천원

 ※ 통합돌봄 자문위원회 분기별 1회 정도 개최 예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자문단 수당에 연 3,6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**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**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’에 해당

작 성 자			
소속 및 직위	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	**성명** **(연락처)**	이효은 (053-668-8251)